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7-106
----------	----------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Ⅰ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

1. 제안이유

- 시장 주차 수요대비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1.19.: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신청(중소기업청)
- 2017.3.17: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선정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거창시장 주차장 지내
- 사업기간: 2017.9. ~ 2018.6.
- 부지면적: 3,290㎡(토지소유자: 거창군)
- 사 업 량: 3,750㎡(3층 4단, 자주식 철골 주차장)
- 사 업 비: 2,930백만원(국비 1,758 군비 1,172)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사업량				
신축	건물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대지	3,750㎡ (주차면 190면)	2,930,000	2018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거창 군수

※ 기준가격은 사업비로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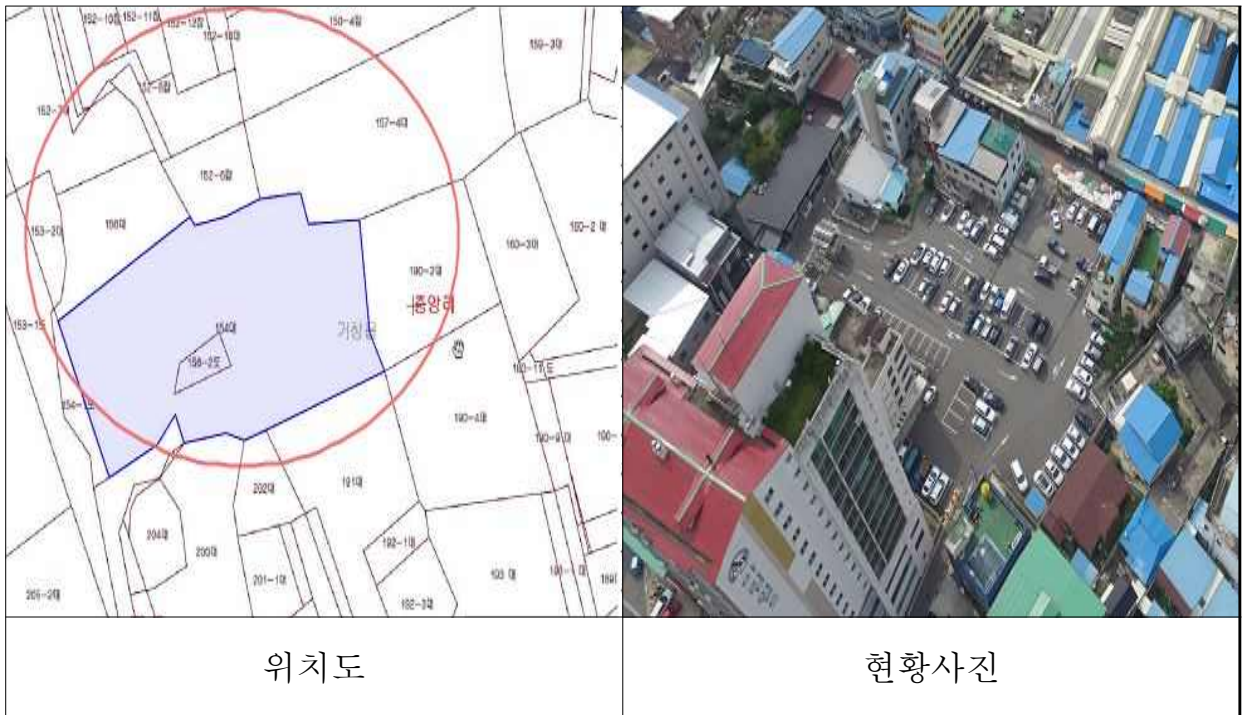
라.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2017.9.
- 착공: 2017.12.
- 준공 및 건물등기: 2018.6.
- ※ 현재 주차면수 90면 ⇒ 사업 후 190면 확보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읍 중앙리 154 외 1필지)



②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1. 제안이유

- 골프참여 인구의 대중화 및 국민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하여 조성 완료된 골프장 시설의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08.12.2.: 골프장조성협약 체결(거창군 ⇔ 체육진흥공단)
- 2012.9. ~ 2016.6.: 골프장 조성공사(체육진흥공단)
- 2017.7.20.: 기부채납 승인 요청(체육진흥공단 ⇒ 거창군)

나. 기부채납 개요

- 기부자
 - 대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권한대행 김성호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 거: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제5조(운영권보장 및 기부채납)
- 기부재산
 - 기부재산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고
총 액	19,943,363,854	
공 단	13,606,605,022	기부채납
거창군	6,337,058,832	진입도로 등

○ 기부채납 재산 현황

구 분	내 용
재산의 명칭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대 지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지 역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571,765.4m ² (172,958평)
기부채납재산	건축물 : 클럽하우스, 관리동, 경비실, 카트창고, 야외화장실, 라이트시설 골프코스 : 그린, 티, 페어웨이, 벙커, 러프, 연습그린

다. 기부재산 세부내역

구 분	면적(m ²)	규 모
합 계	571,765.4	
운 동 설	골프코스 129,083	그린(7,464) 티(2,252) 페어웨이(68,437) 러프(48,476), 벙커(1,802), 연습그린(652)
건 축 설	클럽하우스 3,140	락커, 샤워실, 사무실, 레스토랑 등
	관리동 2,410	장비창고, 사무실, 락카/샤워실, 숙직실
	카트고 1,400	승용식 전동카트 보관 창고
	경비실 7	안내실 겸용(클럽하우스 앞)
	야외화장실 (6.24)	2번~5번홀 사이
원형보전녹지	387,283.4	
부대 시설	진입도로 3,307	B(폭)= 10m / L(길이)= 334m
	관리도로 848	B(폭)= 4m / L(길이)= 217m
	카트로 14,144	B(폭)= 2.7m / L(길이)= 4,844m
	주차장 5,591	174대(장애인 9면 포함)
	저류지 21,130	11개소
	물탱크 914	1개소
	묘포장 2,508	1개소
	가스저장고	1개소
	야간조명	15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군 가조면 우록길 410-284)



③ 균유임야 매각

1. 제안이유

-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균유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계장)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158-1
- 면 적: 3,306㎡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필지		3,306	992
매각	토지	북상면 갈계리 산158-1	임야	3,306	992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당 300원)

나. 재산 대부현황

- 주 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41-20
- 성 명: 서대수
- 대부용도: 기타용(양계장)
- 대부면적: 3,300㎡
- 대부계약: 2012. 1. 1. ~

다. 추진경위

- 1980년대 후반 ~ : 양계업 시작.
- 2012.1.~4.: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및 최초 대부계약 체결.

※ 변상금부과: 2007.1.1~2011.12.31.(37,730원)/2017년 대부료: 약45,000원(연간)

- 2017.5.: 무허가 축사 양성화정책에 따라 임대 토지 불하 희망
- 2017.6.~7.: 산158번지에서 산158-1번지 분할 완료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
- ※ 양성화 불가 시 사용중지폐쇄명령으로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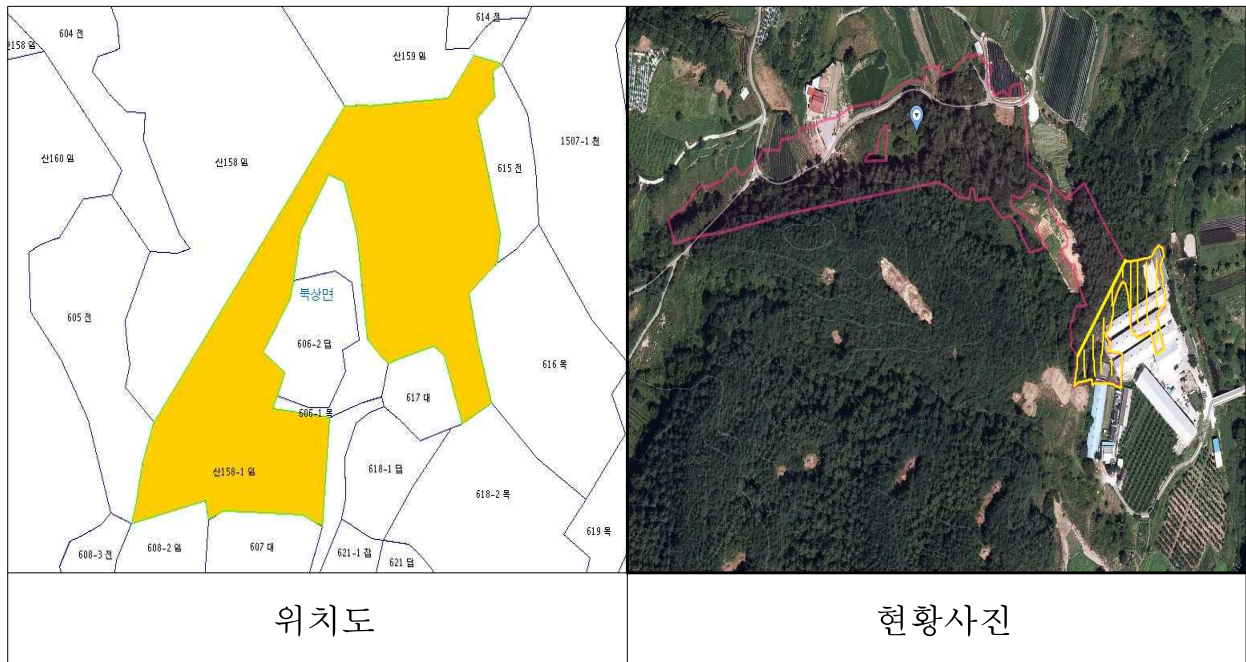
라. 향후계획

- 2017. 11월 중: 토지매각(일반경쟁입찰)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 위치도 및 현황사진(북상면 갈계리 산158-1)



4] 거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1. 제안이유

- 거창 실내체육관은 준공 후 24년 지난 건축물로써 시설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등급 'C등급'으로 종합적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천장재 석면 검출로 중장기적 해체 및 제거가 필요함에 따라 개보수를 통해 내구연한을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1.26.: 문체부 공모계획 안내(경남도→거창군)
- 2017.2.21.: 기본설계 및 공모신청(거창군→경남도→문체부)
- 2017.4.5.: 공모 선정(국민체육진흥기금 600백만원)
- 2017.5.26.: 제1차 기금 교부(323백만원)
- 2017.6.12.: 인조잔디, 우레탄 교체 기금 교부(277백만원) 계획 안내
- 2017.7.4.: 제2차 기금 교부 신청
- 2017.8월 이후: 제2차 기금 교부 예정(277백만원)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거창실내체육관)
- 규 모: 건축면적(1,821.7㎡) / 연면적(2,949.1㎡)
- 사업기간: 2017. 10. ~ 2018. 2. (5개월)
- 사 업 비: 1,200백만원(기금 600백만원, 군비 600백만원)
- 주요내용
 - 실내바닥 철거·교체, 내외부 보수·보강, 석면 철거·해체, 전열
 - 전등설비, 정보통신, 소방, 피난·경보설비, 냉난방 공사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리모델링
지목	소재지	면적		
토지 (체육용지)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	64,964	974,460	-
건물 (R/C조)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	2,949.1	961,406.6	1,200,000

라. 향후 추진계획

- 2017. 8. ~ 9.: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 2017. 9.: 계약 및 공사 발주
- 2017. 9.~18. 2.: 공사 및 준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현황사진



5]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어르신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함.
- 이에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1개소 2필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재 산 의 표 시			소유자	비고
위치	지목	면적		
거창읍 김천리 237-16	잡종지	606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사유지	군유지 인접부지

나.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번지
- 사업기간: 2017.8. ~ 2018.3.
- 부지면적: 861㎡(군소유: 530㎡, 개인소유: 331㎡)

○ 사 업 비: 1,191백만원(국·도비675, 군비516)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계	1,191	600	75	516	
시설비	991	600	75	316	
부지비	200			200	

※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1㎡당 1,870천원) ⇒ 건물면적 530㎡

- 주요기능: 노인요양등급미등급자(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주간(낮)보호시설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욕구과약,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상담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관리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천원)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신축

※ 기준가격: 토지(2017년도 공시지가)/ 건물신축(건축 및 시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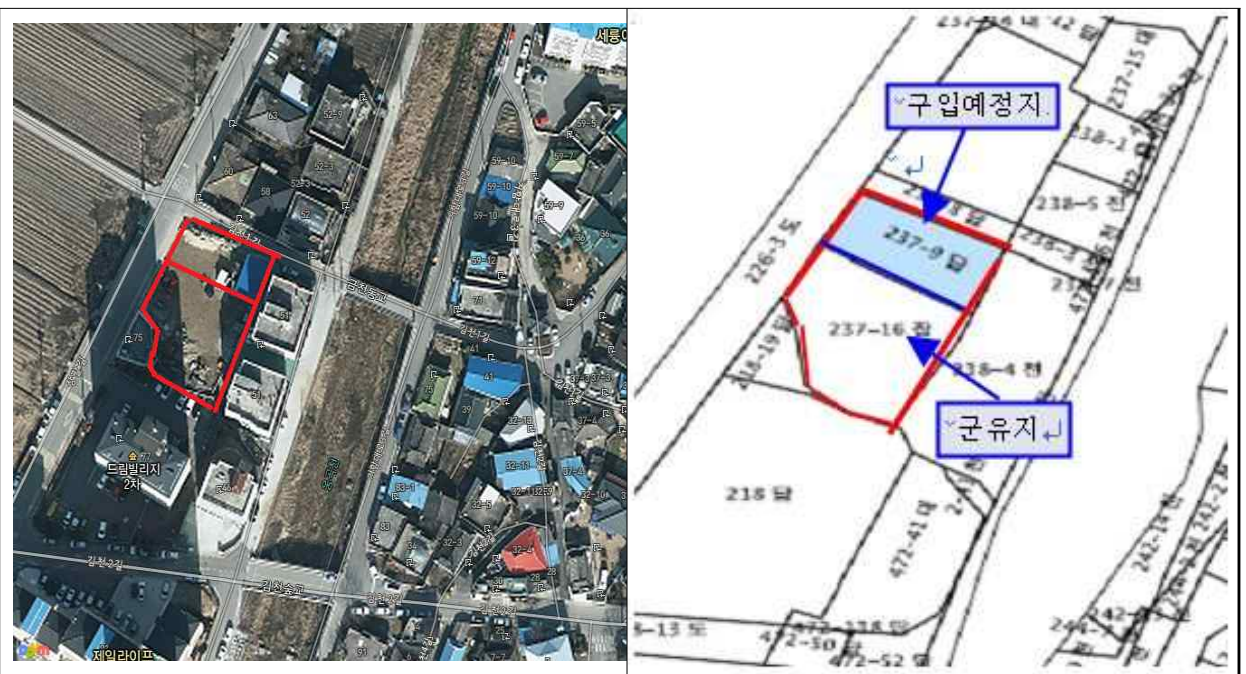
라. 향후계획

- 2017. 9.: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 2017. 10.: 설계용역
- 2017. 11.: 착공
- 2018. 6.: 준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⑥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

1. 제안이유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을 확충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치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7.2.: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 수요조사(경남도→거창군)
- 2017.8.1.: 치매안심병동 수요조사보고(거창군→경남도)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사업기간: 2017.9. ~ 2018.3.
- 규 모: 100병상 부지4,283m²(연면적2,568m²)
- 사 업 비: 1,200백만원(국비960, 군비240)
- 주요내용
 - 2층 전체(50병상) 치매전문병실로 리모델링
 - 4층 치매집중 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취득가액	비고
	소 재 지	장소	면적등		
증축등	거창읍 운정3길180	2층(9실/50병상)	754.2	350,000	리모델링
		4층(증축/프로그램실)	198.0	600,000	증 축
		2층~4층	장비및프로그램	250,000	9종 등 구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현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준공 일자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부지면적	규 모			
대지	거창읍 운정3길180	4,283	-	'05.12.28.	515,244	거창군수
건물	거창읍 운정3길180	2,568	지하 1층 지상 4층	'05.12.28.	1,514,515	거창군수

라. 향후계획

- 2017.9.: 추경(군비) 편성 및 행정절차
- 2017.10.: 설계 실시
- 2017.11.: 계약 및 공사발주
- 2017.12. ~ 2018.3.: 공사 및 준공
- ※ 경상남도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읍 운정3길 180)



위치도



현황사진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

(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